



**제 572호 2023. 8. 24(목)**

**입법예고**

제2023-3625호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888
제2023-3627호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896
제2023-3641호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905
제2023-3658호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915

**고 시**

제2023-272호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5919
제2023-276호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5-1)사업 실시계획 고시	35922
제2023-278호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924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조례 목적과 해당 조문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문안 수정함(안 제5조의2)
- 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문안 수정함(안 제5조의3)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4)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5)

4. 의견제출

가.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건설과(하도급관리팀)  
(전화 : 055-330-3798, FAX 055-330-3789, E-Mail cek4162@korea.kr)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 담당자(055-330-37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치법규명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조례 목적과 해당 조문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문안 수정함(안 제5조의2)
- 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문안 수정함(안 제5조의3)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4)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5)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2절
- 예산관련: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2023. 8월 중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2023. 8월 중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2023. 8월 중
- 입법예고: 2023. 8월 중
- 비용추계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2023. 9월 중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촉진하기”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3.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수주액 제고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등 참여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등 참여 권장)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5조의3(지역건설산업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4(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u>활성화를 촉진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u></p> <p>제1조(목적) ----- ----- ----- <u>활성화하기</u>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u></p> <p>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u></p> <p>제4조의2(<u>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u>) ① 시장은 <u>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u></p> <p>2. <u>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u></p> <p>3. <u>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u></p>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제5조의3(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수주액 제고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등 참여 권장)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5조의3(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4(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  
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  
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  
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  
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4(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  
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  
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  
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  
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  
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김해시의 시정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변경(안 별표 3·5)

구 분	종 류	현 행	개 정 안
별표3	브랜드슬로건		
별표5	캐릭터	 (해동이)	 (토더기)

나. 역사문화슬로건 신설(안 별표 4)

구 분	종 류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역사문화슬로건	-	

다. 상징물의 의미

	<p>‘걱정 말아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시가 지향하는 상징적 가치로 시각화하여, 시민과 김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근하고 포근한 이미지를</p>
<p>돈위리 김해피</p>	<p>전하고, 운율감과 리듬감을 강조해 생동감 있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함.</p>
	<p>2011년 주촌면 망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오리문양 토기를 모티브로 흙 ‘토’(土)와 오리를 뜻하는 영단어 Duck을</p>
<p>토더기</p>	<p>한글로 표기한 ‘더기’를 합성해 ‘토더기’로 작명하였으며, 김해의 역사적 유물을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상징화함.</p>

※ 는 계속 사용하되, 역사·문화·관광분야 대표 슬로건으로 활용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13.까지 김해시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

(전화: 055-330-3156, 팩스: 055-722-1432)

# 의견제출서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치법규명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김해시의 시정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징물 중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변경(안 별표 3·5)
  - [별표3] 브랜드슬로건 : 김해포유(**Gimhae for You**)를 돈 워리 김해피(**DON'T WORRY GIMHAEPY**)로 변경
  - [별표5] 캐릭터 : 해동이()를 토더기()로 변경
- 상징물로 역사문화슬로건 신설(안 별표 4)
  - [별표4] 역사문화슬로건 : 가야왕도김해(**가야왕도김해**) 추가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기 타
  - 입법예고 :
  - 조례·규칙심의회 : 2023. 9. 18.(월)

김해시 조례 제 호

##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캐릭터”를 “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캐릭터”를 “역사문화슬로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캐릭터 : 별표 5

6. 자연상징물 : 별표 6

별표 3~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기(市旗),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자연 상징물(시화, 시목, 시조) 등의 매체를 말한다.</p> <p>제3조(종류) ①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캐릭터</u> : 별표 4</p> <p>5. <u>자연 상징물</u> : 시화(市花)-매화, 시목(市木)-은행나무, 시조(市鳥)-기러기(별표 5)</p> <p>&lt;신설&gt;</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김해시 이미지 통합디자인 매뉴얼」 및 「김해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규격, 모양, 색상, 글씨체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 ----- ----- ----- -- <u>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u>----- ----- --.</p> <p>제3조(종류)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역사문화슬로건</u> ----- -----</p> <p>5. <u>캐릭터</u> : 별표 5</p> <p>6. <u>자연상징물</u> : 별표 6</p> <p>② ----- <u>제5호</u>----- ----- ----- ----- ----- -----.</p>


[별표 3]

브랜드슬로건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형태

기본형	작도형
	
한글병기형	작도형
	

2. 의미

김해시 브랜드슬로건  는 ‘걱정 말아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시가 지향하는 상징적 가치로 시각화하여, 김해시민과 김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근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전하고, 운율감과 리듬감을 강조해 생동감 있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함.

3. 색상규정

			
<p>가이돌안황금색 GCD41</p>	<p>GC066</p>	<p>PANTONE 654 C</p>	<p>GC009</p>
<p>CO M23 Y92 K3 R 248 G 191 B 19</p>	<p>C60 M0 Y52 K68 R 33 G 82 B 39</p>	<p>C100 M71 Y10 K47 R 0 G 58 B 112</p>	<p>CO M76 Y87 K47 R 135 G 32 B 17</p>
<p>KS 2.5Y 2/12</p>	<p>KS 100Y 3/6</p>	<p># 003A7D</p>	<p>KS 10R 3/10</p>



[별표 4]

역사문화슬로건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형태

기본형	작도형
	

2. 의미

김해시 역사문화슬로건  는 김해시가 2천년 전 동북아 최대의 해상왕국인 가야의 역사·문화를 계승하였다는 도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미지화하였으며, 한 쌍의 금관  은 수로왕과 허왕후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가야의 예술성을 상징함.

3. 색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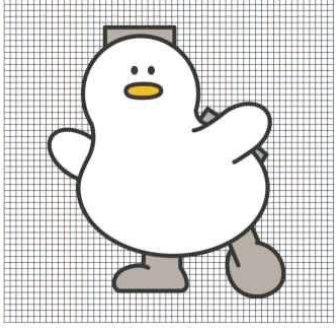
	<p>PANTONE 1788C</p>		<p>PANTONE 2145C</p>		<p>PANTONE 1375C</p>
---	--------------------------	---	--------------------------	--	--------------------------



[별표 5]


캐릭터 (제3조제1항제5호 관련)

1. 형태





기본형	작도형
	

2. 명칭 : 토더기

3. 의미

김해시 캐릭터인 는 2011년 주촌면 망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오리문양 토기를 모티브로 흙 ‘토’(土)와 오리를 뜻하는 영단어 Duck을 한글로 표기한 ‘더기’를 합성해 ‘토더기’로 작명하였으며, 김해의 역사적 유물을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상징화함.

4. 색상규정

 <p>PANTONE 000 C CO MO YO KO R 255 G 255 B 255 #FFFFFF</p>	 <p>가야들판황금색 GC041 CO M23 Y92 K3 R 248 G 191 B 19 KS 2.5Y 8/12</p>	 <p>고분밝은갈색 GC046 CO M2 Y10 K20 R 205 G 200 B 185 KS 5Y 8/1</p>	 <p>PANTONE BLACK 90% CO MO YO K90 # 3E3A39</p>
--	--	---	---

[별표 6]

자연상징물 (제3조제1항제6호 관련)

	종류 및 의미
<p>시 화 (市花)</p>	<div data-bbox="658 358 996 58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3 584 929 617">&lt; 매 화 &gt;</p> <ul data-bbox="454 633 1239 785"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자로서 으뜸가는 꽃</li> <li>◦ 이른 봄 터질 듯한 꽃봉오리는 김해시민의 강인한 성품과 기품을 상징</li> <li>◦ 꽃의 맑고 청아함은 품격 높은 김해시를 상징</li> </ul>
<p>시 목 (市木)</p>	<div data-bbox="651 799 1003 103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15 1034 951 1068">&lt; 은행나무 &gt;</p> <ul data-bbox="454 1083 1239 1217"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중 하나</li> <li>◦ 웅장한 나무의 자태는 번영을 나타냄</li> <li>◦ 나무의 긴 생명과 역사는 김해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li> </ul>
<p>시 조 (市鳥)</p>	<div data-bbox="651 1236 1003 147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3 1471 929 1505">&lt; 기러기 &gt;</p> <ul data-bbox="454 1520 1239 1634"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과 풍요로움을 상징</li> <li>◦ 협동과 단결심이 강한 새의 기질은 인구 50만 대도시 김해시민의 모습을 잘 나타냄</li> </ul>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과학적 데이터 행정체계 도입 필요

3.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당초)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변경) 김해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공데이터”, “제공”,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내용 추가
- “통계 ” 내용 삭제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를 하나로 묶음
-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 추가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과의 협력방안 노력 추가

○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안 제6조)

-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데이터책임관으로 변경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을 추가 부여
-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및 지원 추가

○ 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데이터 실무협의회로 변경
- 데이터 실무협의회는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실무에 대해 협의

○ 데이터의 품질관리 (안 제10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
-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안 제11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비공개대상 정의 및 기술처리를 통한 제공
- 공공데이터의 비공개 내용 포함여부 주기적 점검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안 제12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 모니터링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안 제17조) : 신설

-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시행
-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 기타사항 : 조문체계, 자구 등 일부사항 변경

4. 의견제출

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스마트도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담당관(데이터융합팀)

(전화 : 055-330-3192, FAX 055-330-2669, E-Mail kshan1999@korea.kr)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담당자(055-330-31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치법규명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과학적 데이터 행정체계 도입 필요

## 2.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당초)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변경) 김해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공데이터”, “제공”,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내용 추가
  - “통계 ” 내용 삭제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를 하나로 묶음
  -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 추가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과의 협력방안 노력 추가
-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안 제6조)
  -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데이터책임관으로 변경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을 추가 부여
  -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및 지원 추가
- 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데이터 실무협의회로 변경
  - 데이터 실무협의회는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실무에 대해 협의
- 데이터의 품질관리 (안 제10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
  -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안 제11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비공개대상 정의 및 기술처리를 통한 제공
  - 공공데이터의 비공개 내용 포함여부 주기적 점검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안 제12조) : 신설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 모니터링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안 제17조) : 신설

-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시행
-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 기타사항 : 조문체계, 자구 등 일부사항 변경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실시 : 2023. 8월 중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23. 8월 중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2023. 9월 중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해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 행정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 3.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 2.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 3.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
-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수집·통합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나이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도입·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이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김해시정연구원’을 ‘김해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09. 13.까지 김해시장

(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도시상임기획단)

(전화:055-330-6749, FAX:055-722-4502)

# 의견제출서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핸드폰) :

자치법규명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준비 중인 우리시 김해시정연구원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김해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사항(제1조, 제2조, 제5조)
  - (개정 전) 김해시정연구원
  - (개정 후) 김해연구원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3. 8월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2023. 8월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3. 8월
- 입법예고 : 2023. 8월 ~ (20일간)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023.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9월

김해시 조례 제 호

#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김해시정연구원**”을 “**김해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김해시정연구원**”을 “**김해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김해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김해연구원육성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김해시정연구원장**”을 “**김해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u>김해시정연구원</u>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u>김해시정연구원</u>(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생략)</p> <p>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u>김해시정연구원육성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③ <u>김해시정연구원장</u>(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u>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김해연구원</u>----- ----- -----.</p> <p>제2조(설립) ① ----- -- <u>김해연구원</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 ① ----- ----- <u>김해연구원육성기금</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김해연구원장</u>----- ----- -----.</p> <p>④ (현행과 같음)</p>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3-145호(2023. 5. 18.)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김 해 시 장**

**I.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부원동 192번지 일원
- 면 적 : 212,960.3m<sup>2</sup>

**3.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0번길 65-4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5. 21. ~ 2023. 12. 31.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해당사항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0. 기타사항(변경)**

-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사업비	54,395,688,184	증) 1,276,968,589	55,672,656,773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인가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II. 실시계획(변경) 인가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부원동 192번지 일원
- 면적 : 212,960.3㎡

### 4.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0번길 65-48

###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5. 21. ~ 2023. 12. 31.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

### 8. 기타사항(변경)

- 사업방식 : 환지방식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사업비	54,395,688,184	증) 1,276,968,589	55,672,656,773	

###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I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5-1)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5-1)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5-1)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 도시바람길숲(진영폐선부지 1단계 연결숲) 조성사업
3. 사업 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도시계획 결정(m <sup>2</sup> )	금회 시행규모(m <sup>2</sup> )	최초결정일
완충녹지5-1	179,841	4,643	1982.3.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5. 사업 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4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신청 사유
  -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화적 휴식공간 확충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리	지번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진영읍 신용리	556-1	철	562	302	국토교통부					
2	"	555-1	철	271	187	국토교통부					
3	"	554-1	철	357	249	국토교통부					
4	"	553-1	철	278	198	국토교통부					
5	"	552-1	철	17	2	국토교통부					
6	"	551-1	철	321	253	국토교통부					
7	"	550-1	철	264	154	국토교통부					
8	"	549-1	철	394	394	국토교통부					
9	"	548	철	73	73	국토교통부					
10	"	348-1	철	13	12	국토교통부					
11	"	700-124	철	7,051.2	2,819	국토교통부					
합 계				9,601.2	4,643						

##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6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08. 24.

###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6호선)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180	중1-35	신용리 178	일반 도로	-	2009. 11.26	※ 도로 선형변경에 해당 ※ 연장(1) 변경사항은 기 고시 사항 착오 정정을 위함.
변경	중로	3	16	12	국지도로	807	중1-35	신용리 700-29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6호선	중로 3-16호선	·폭원 : 12m(변경없음) ·연장 : 180m → 807m ·면적 : 9,998㎡ → 10,730㎡ ·종점 : 진영읍 신용리 178 → 진영읍 신용리 700-29	·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관련 지형도면 : 게재생략